

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262호(2022.07.08.)로 사업인정고시 된 지방도314호선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7월 19일

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(주) 대표이사

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나. 사업의 명칭 : 지방도 314호선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
- 다. 사업시행자 :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
- 라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,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, 음양리 일원
- 마. 면적 또는 규모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결정 (변경)	중로	1	정1	20~29	보조 간선 도로	1,462	오산시 벌음동134-34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103-13	구역계 남서측 경계	일반 도로	-	화성시고시 2015-570호	L=800 : 지구내 L=662 : 지구 외 진입도로
시행	중로	1	정1	20~29	보조 간선 도로	1,462	오산시 벌음동134-34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103-13	구역계 남서측 경계 (음양리 635-1)	일반 도로	-		L=800 : 지구내 L=662 : 지구 외 진입도로

2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: 세부내역 별지 참조

토지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,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.

3. 열람장소 및 기간 등

- 가. 열람장소
 - ▣ 화성시 :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60번길 12,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(☎ 031-5189-2673)
 - ▣ 오산시 : 오산시 성호대로 141, 오산시청 도로과 (☎ 031-8036-7687)
 - ▣ 보상팀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, A동 1713호(대치동, 상제리제센타)
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(주) 보상팀 (☎ 02-3452-1332, 010-5607-4036)
- 나. 열람기간 : 2022. 7. 19. ~ 2022. 8. 3. (15일간)

다. 의견제출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, A동 1713호(대치동, 상제리제센타)
 라. 이의신청 :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(주)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,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.

4. 보상시기 : 보상액 산정완료 시 보상협의 요청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금 산정 및 통지 : 보상액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보상에 필요한 서류는 개별 통지합니다.

나. **보상절차 : 보상계획 열람공고 ▶ 감정평가 ▶ 보상액산정 ▶ 손실보상 협의요청**

6. 기타사항

가. 보상금액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상 협의 요청 시에 손실보상 협의요청 문서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

나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 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.

다. 보상대상 편입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, 사업구역 내 분묘연고자는 분묘 연고에 관한 권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마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(보상액 산정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시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)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각각 추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

토지소재지	당초지번	편입면적 (㎡)	토지소유자		소유자 확인	연락처	비고
			성명	주소			

☞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바. 기타 보상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(주) 보상담당자(☎010-5607-403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 의 신 청 서

제 목		지방도314호선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
당사자	성 명	
	주 소	
의 견		
기 타		
<p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.</p> <p>2022. . .</p> <p>이의신청인 주 소 :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전화번호 :</p> <p>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(주) 귀중</p>		
비 고	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	